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1048호 2014. 9.29.(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30호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3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 ----- 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 ----- 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33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 ----- 51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32호 인천광역시 서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 ----- 57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3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 ----- 64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34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65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19호 인천광역시 서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현장
운영 규정 ----- 68

뒷면에 계속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14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7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15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7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151호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 고시 --- 77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1099호 가좌주공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공람·공고 ----- 7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1104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8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110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0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1108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 123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미디어과 [032-560-4142]



[별표 1]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용 량	요 금(원)	비 고
분 뇨		10리터당	401	수수료에는 1리터당 1원씩의 처리 요금이 포함되어 있음
개인하수처리시설	기 본	750리터까지	21,053	
	추 가	100리터당	1,628	

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체계적인 관리를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 및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3.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의회 의원, 공무원,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서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④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시간 48시간 전 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회의록의 공개)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의2 및 영 11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회, 시의회, 구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제113조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 업무는 위원회가 의결로 정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공동위원회의 운영)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4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 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 다. 해당 지역의 구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인천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해야 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32조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옥외광고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

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⑦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시 조례 및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게 공개경쟁에 의해 심의위원회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항목에 의한 평가를 거쳐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 게시판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2.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와 인천광역시에서 위탁한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세외수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6조(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한 보상) 시 조례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현수막, 벽보 및 전단 이외의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표시 허가 및 신고 중인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0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1㎡ 이상 7.0㎡ 이하	65만원
- 7.1㎡ 이상 8.0㎡ 이하	75만원
- 8.1㎡ 이상 9.0㎡ 이하	85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45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65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85만원
4) 면적 20㎡ 이상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0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9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1㎡ 이상 7.0㎡ 이하	65만원
- 7.1㎡ 이상 8.0㎡ 이하	75만원
- 8.1㎡ 이상 9.0㎡ 이하	85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5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7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30만원
- 0.6㎡ 이상 1.0㎡ 이하	35만원
- 1.1㎡ 이상 2.0㎡ 이하	40만원
- 2.1㎡ 이상 3.0㎡ 미만	48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55만원
- 3.6㎡ 이상 4.0㎡ 이하	65만원
- 4.1㎡ 이상 4.5㎡ 이하	80만원
- 4.6㎡ 이상 5.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110만원
- 6.1㎡ 이상 7.0㎡ 이하	130만원
- 7.1㎡ 이상 8.0㎡ 이하	150만원
- 8.1㎡ 이상 9.0㎡ 이하	17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3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5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8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1㎡ 이상 7.0㎡ 이하	65만원
- 7.1㎡ 이상 8.0㎡ 이하	75만원
- 8.1㎡ 이상 9.0㎡ 이하	85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1㎡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5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7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210만원
- 21.1㎡ 이상 30.0㎡ 이하 230만원
- 30.1㎡ 이상 35.0㎡ 이하 245만원
- 35.1㎡ 이상 40.0㎡ 이하 260만원
- 40.1㎡ 이상 45.0㎡ 이하 280만원
- 45.1㎡ 이상 50.0㎡ 미만 290만원

5) 연면적 50㎡ 이상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30만원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5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60만원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70만원
- 연면적 21㎡ 이상

7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3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60만원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 · 조명탑 · 안내탑 · 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30만원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5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60만원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70만원
- 연면적 21㎡ 이상

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p>2) 교통안내소</p> <p>3) 안내게시판 · 지정벽보판 · 버스승강장 · 택시승강장 · 관광안내도</p> <p>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p> <p>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p> <p>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p> <p>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p>	<p>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p>가로형 간판에 준함</p> <p>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p> <p>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p> <p>150만원 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p>10만원 20만원 29만원</p> <p>35만원 45만원</p> <p>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p>
--	--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 등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2.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 · 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

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 등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2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그 밖의 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 등	수수료 ※구지역	비고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2)를 제외한다) - 면적 6㎡ 이하 4,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시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뒤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20㎡ 이하 40,000원 - 면적 2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3,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20,000원 - 연면적 3.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1개마다로 한다) 5,000원		
라. 공연간판	가로형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4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m ² 이하		20,000원
- 연면적 10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마다로 한다)		20,000원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m ² 이하		3,000원
- 연면적 1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면적 또는 연면적 5m ² 이하		13,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마다로 한다)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 · 철도차량 · 도시철도차량 · 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마다로 한다)		5,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마다로 한다)		5,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m ² 이하		6,000원
- 10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10,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하. 벽보(50매마다로 한다)	5,000원	
거. 전단(1,000매마다로 한다)	5,000원	
너.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종류의 광고물 등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 밖의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별표 5]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1.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시·구지역	비고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13만원	
- 0.6㎡ 이상 0.8㎡ 이하			22만원	
- 0.9㎡ 이상 1.0㎡ 미만			32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42만원	
- 1.4㎡ 이상 1.6㎡ 이하			50만원	
- 1.7㎡ 이상 2.0㎡ 미만			64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75만원	
- 2.4㎡ 이상 2.6㎡ 이하			100만원	
- 2.7㎡ 이상 3.0㎡ 미만			12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8만원	
- 0.6㎡ 이상 0.8㎡ 이하			12만원	
- 0.9㎡ 이상 1.0㎡ 미만			14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25만원		
- 1.4㎡ 이상 1.6㎡ 이하		33만원		
- 1.7㎡ 이상 2.0㎡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58만원		
- 2.4㎡ 이상 2.6㎡ 이하		67만원		

- 2.7m ² 이상 3.0m ² 미만	79만원
라) 연면적 3m ² 이상	80만원+연면적 3m ² 초과하는 면적의 0.5 m ² 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m ² 미만	
- 1.0m ² 이하	8만원
- 1.1m ² 이상 2.0m ² 이하	12만원
- 2.1m ² 이상 3.0m ² 미만	14만원
나) 면적 3m ² 이상 5m ² 미만	
- 3.0m ² 이상 3.7m ² 이하	22만원
- 3.8m ² 이상 4.4m ² 이하	25만원
- 4.5m ² 이상 5.0m ² 미만	32만원
다) 면적 5m ² 이상 10m ² 미만	
- 5.0m ² 이상 6.0m ² 이하	42만원
- 6.1m ² 이상 8.0m ² 이하	58만원
- 8.1m ² 이상 10.0m ² 미만	75만원
라) 면적 10m ² 이상	80만원+연면적 10m ² 초과하는 면적의 1m ² 당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 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 지 증가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5천원
- 21장 이상	장당 42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3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3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라. 1년 이상			400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 등의 내용						
	② 성 명	③ 주 민 등 록 번 호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자 의 업 무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원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	-----	-----	----	-----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인천광역시 서구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기 한(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직인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 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청 번호	② 신청 일자	신청자			⑥ 광고 물 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 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 등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일련 번호	② 광고물 종류	③ 표시 내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반자 · 위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반환 청구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가 신고 번호	광고주				광고물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9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직인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불참신고서

계 호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제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직인

“100%”를 “10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장애인 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1등급 내지 6등급”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1등급부터 6등급까지”로, “50%감면 1회주차”를 “50퍼센트 감면 1회주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60%감면”을 “60퍼센트 감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중 “자가용 승용차 부제 참여차량”을 “자가용 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50퍼센트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 같은 호 가목, 나목,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00%감면”을 “100퍼센트 감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50%감면”을 “50퍼센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100%”를 “10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0퍼센트 감면

제5조제8호 중 “20%”를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함) : 최초부터 30분까지 면제

제6조 중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1항 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안전관리등”을 “안전관리 등”으로, “사고등을”을 “사고 등을”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 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차량등)”를 “차량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내용등”을 “내용 등”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으로, “당해지역”을 “해당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제한사유 등을”을 “제한사유 등을”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사항등”을 “사항 등”으로 한다.

제12조 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 을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공보”를 “구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다만 다음 각호”를 “다만,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잔여일수”를 “남은일수”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노외주차장부대시설의 종류등)”을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국토해양부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토교통부령 제6조제5항에 따라”로,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중 “표시등”을 “표시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배치 등”을 “배치 등”으로, “당해주차장”을 “해당 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 제3조의 규정을”을 “국토교통부령 제3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중 “장애인등”을 “장애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등”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등”을 각각 “장애인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다면”을 “바닥면”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 19조제4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이호”를 “이호”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산정기준등”을 “산정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본문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을 “해당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 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 조제2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용자등)”을 “(용자 등)”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주택법」 제42조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발부일”을 “발급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사람”으로, “발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의2 중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차량의 배정대상등)”을 “(차량의 배정대상 등)”으로 한다.

제7조 중 “이하 배정”을 “이하 “배정””으로 한다.

제10조 중 “별표3에 의하여”를 “별표 3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정수대장 정비등)”을 “(정수대장 정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정비등”을 “정비 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운행기간이 내구연한을 초과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승용차·소형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정한다)”를 “별표 1의 최단운행 기준연한을 초과한 경우”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정수의 직권감축등)”을 “(정수의 직권감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년이내”를 “1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차량정수관리상”을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 상”으로 한다.

제14조 중 “구청장으로 부터”를 “구청장으로부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집중관리 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효율적 이라고”를 “효율적이라고”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차량관리방법)”을 “(차량관리 및 운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예산등”을 “예산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차량에 대한”을 “차량의”로, “기타”를 “및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운행에 관한”을 “운행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9조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유류구입등)”을 “(유류구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카드제 등”을 “카드결제 등”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차량배차시”를 “차량배차 시”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청사내”를 “청사 내”로, “차고내”를 “차고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를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차고내”를 “차고 내”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근무시간후 차량관리)”를 “(근무시간 후 차량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직중”을 “당직 중”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무시”를 “근무 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제25조제2호 중 “운전중”을 “운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지역외”를 “지역 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운전중”을 “운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조·기능등에 정통하여 운전중”을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전중”을 “운전 중”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고발생시”를 “사고발생 시”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0조 전단 중 “구산하기관”을 “구 산하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등에 관하여 제24조 내지 제27조”를 “등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운전전”을 “운전 전”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근무시간내”를 “근무시간 내”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제6조 관련)

차종	차형	배정대상	최단운행기준연한
승용차 (전용)	대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승용차량을 말한다)	· 구청장	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중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승용차량을 말한다)	· 부구청장	
승용차 (의전용)	대형승용차	· 구의회 의장	
승용차 (업무용)	중형승용차	· 구분청	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
	소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소형승용차량을 말한다)	· 구분청, 구산하기관	
	경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승용차량을 말한다)	· 구분청, 구산하기관	
	짚형 또는 다목적형 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	· 구분청, 구산하기관	
승합용	대형승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승합차량을 말한다)	· 구분청, 구산하기관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 내구연한 적용
	중형승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승합차량을 말한다)	· 구분청, 구산하기관	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
	소형승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소형승합차량을 말한다)	· 구분청, 구산하기관	km를 초과한 경우
	경형승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승합차량을 말한다)	· 구분청, 구산하기관	(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최단운행기준연한
화물용	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 구본청, 구산하기관	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이 7년 이상)
	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톤 초과 10톤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 구본청, 구산하기관	
	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 구본청, 구산하기관	
	경형화물차(배기량 800cc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 구본청, 구산하기관	
특수용	청소차	· 구본청, 구산하기관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 내구연한 적용
	구급차	· 구본청, 구산하기관	
	분뇨차	· 구본청, 구산하기관	
	진료차	· 구본청, 구산하기관	
	이동수리차	· 구본청, 구산하기관	
	급수·살수차	· 구본청, 구산하기관	
	트럭트렉타	· 구본청, 구산하기관	
	트레일러	· 구본청, 구산하기관	
	렉카차	· 구본청, 구산하기관	
	기타 특수차	· 구본청, 구산하기관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제8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 및 쉼형, 다목적 승용차
구 본 청	21대	1대 (구청장 전용)	2대 · 부구청장전용 1대 · 업무용 1대	18대
구 의회사무국	2대	1대 (의장전용)		1대
보 건 소	4대			4대
출 장 소	1대			1대

※ 단, 경형승용차에 대하여는 승용차량 기준정수에 포함하지 않음

2. 승합용 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가.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직속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기타사업용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의정활동 지원 등 특수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3. 화물용 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도로사업용	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종단속용	주차관리단속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동주민센터용	사업용으로 소형화물차량을 적정대수 배정
그밖의 사업용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4. 특수용 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	가.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행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나.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 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그 밖의 사업용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제7조제1항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15일전”을 “15일 전”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20일내”를 “20일 내”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중 “사정에 의한 경우”를 “사정”으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단, 연봉은 퇴직금을 포함한 것으로 하며”를 “단,”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8조에 따라 일시금으로”를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퇴직금은 구청 소속에 임용되어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총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눈 수치에 월 평균보수를 곱한 금액
2. 월 평균보수는 퇴직 전 3개월의 보수 총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수치에 3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3항2호(별표4)는 2015. 연봉 재계약 체결 시점부터 시행한다.

● 별지

- 등급별 급여 지급액 기준표(별표 4)

현 행					개		
등급별 급여 지급액 기준표					등급별 급여		
구분	A(90점이상)	B(80점이상)	C(80점미만)	비 고	구분	A(90점이상)	B(80점이상)
선수	<u>20,400,000</u> (월1,530,000)	<u>18,000,000</u> (월1,350,000)	<u>16,800,000</u> (월1,260,000)		선수	<u>32,000,000</u> <u>0</u>	<u>28,000,000</u> <u>0</u>
※ 단,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에 대해서는 A등급을 적용하여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단,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에 대해서는 A등급을 적용하여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급여 기준표는 타지역 장애인엘리트 선수의 연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구 본청 및 산하기관(이하 “각 부서”라 한다)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 법인, 단체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현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현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제5조(현장의 내용) ① 현장의 내용은 별표1과 같다.

② 합리적인 현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행정서비스현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현장의 구성) 현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조치에 관한 사항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현장 개정 및 절차) ① 현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현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② 현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현장 개정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

2.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확정

3. 현장 발령 및 시행

③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8조(현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현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민 및 기업 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현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현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의 공포 및 홍보) ① 현장을 제정 및 개정할 때에는 이를 구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구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 신고고객이 현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현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① 각 부서에서는 현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구청장 및 「중소기업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음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규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하여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알려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현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현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인천광역시 서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 전 공무원은 구민 및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구민,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여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의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신고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규제 신고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규제 신고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14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9.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청라커널로233번길 5외 1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09. 26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4-09-26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경서동 962-6	청라커널로233번길 5	2011-06-29	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2,3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 서구 경서동 964-10	청라커널로223번길 3	2011-06-29	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2,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 서구 경서동 963-13	청라커널로223번길 6	2011-06-29	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2,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 서구 경서동 844-8	청라한울로49번길 3	2011-02-14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4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 서구 경서동 976-128	옥빛로15번길 2	2013-07-30	옥빛로 시작지점부터 약 1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 서구 왕길동 672-2	완정로133번길 19-1	2008-11-21	완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 서구 마전동 1005-21	완정로34번길 61	2008-11-21	완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 서구 마전동 20	가현산로23번길 45	2013-07-30	가현산로 시작지점부터 약 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 서구 마전동 905-1	완정로188번4길 24	2008-11-21	완정로188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네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 서구 왕길동 48-1, 48-3, 48-4	사월로37번안길 2	2009-08-28	사월로37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 서구 오류동 1624-7	마중로 12	2012-10-19	마중로에서 네번째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 서구 당하동 79-5	고산후로78번안길 14-14	2008-11-21	고산후로78번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 서구 원당동 222-1	원당대로 975-80	2008-11-2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14	인천 서구 당하동 833-1	드림로 406-11	2009-07-12	수도권매립지내 조성예정인 드림파크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15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4. 09.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탁옥로73번길 35외 2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고시일 : 2014-09-26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심곡동 278-3	탁옥로73번길 35	2014-09-16	건물 멸실	
2	인천 서구 왕길동 80	사월로 39	2014-09-19	건물 멸실	
3	인천 서구 왕길동 48-4	사월로37번안길 2	2014-09-19	건물 멸실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151호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도면과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지번 현황 조서는 서구 토지정보과 (☎032-560-483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9월 26일
서구청장

1.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현황

시군구명	설정 등 현황			예비구역번호 수
	설정	변경	폐지	
서구	9	6	0	142

- 국가기초구역별 설정·변경 및 폐지현황은 따로 붙입니다.

※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현황은 별첨과 같으며 이를 시군구 홈페이지에 파일 게시합니다. 다만 자료량이 많아 파일 게시가 곤란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1099호

가좌주공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공람 · 공고

서구 가좌동 308번지 일원 「가좌주공2차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9.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가좌주공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가좌주공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서구 가좌동 308번지 일원	75,024.7	-	75,024.7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5,024.7	-	75,024.7	

4.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5,024.7	-	75,024.7	100.0	
택지	공동주택용지	63,308.2	-	63,308.2	84.4	
기타용지	소계	1,070.0	증) 449.8	1,519.8	2.0	
	노유자시설	450.1	감) 450.1	-	-	
	교육연구시설	-	증) 450.1	450.1	0.6	
	근린생활시설	619.9	증) 449.8	1,069.7	1.4	
정비기반 시설	소계	10,646.5	감) 449.8	10,196.7	13.6	
	도로	5,158.3	-	5,158.3	6.9	
	공원	1,500.8	-	1,500.8	2.0	
	경관녹지	3,537.6	-	3,537.6	4.7	
	주차장	449.8	감) 449.8	-	-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계획

1)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노외 주차장	서구 가좌동 309번지	449.8	감)449.8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①	노외주차장	주차장 폐지 449.8㎡ → 0㎡	○ 인천광역시 주차장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설치 의무사항 삭제에 따른 주차장 폐지

6.건축물의 건축계획

■ 기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 칭	면 적(m ²)	명 칭	면적(m ²)						
기정	가좌주공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75,024.7	획지1	25,143.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99%이하	250%이하	90m이하		
			획지2	38,164.4		21.99%이하	250%이하			
			획지4	449.8	노외주차장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7	450.1	노유자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8	619.9	근린생활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1,2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4	지정용도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제5의5호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획지7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8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설소, 단담주점제외)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 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에 저촉되는 행위 및 시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의 6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한계선	획지1	북서측 대로2-32호선 남서측대로 중로3-122호선 남동측 소로2-1호선 북측인접대지 경계선 동측 인접대지 경계선		폭5m 지정 폭5m 지정 폭3m 지정 폭5m 지정 폭3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확보		
건축한계선	획지2	북서측 대로 2-32호선 북측 중로3-122호선 북동측 중로3-122호선 남측 소로3-10호선 서측소로1-1호선		폭5m 지정 폭3m 지정 폭5m 지정 폭5m 지정 폭5m 지정						
기정	완화적용기준		○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37.6% + 지하주차장계획 10% = 257.6% - 계획용적률 : 250%이하							

■ 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용도	진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가좌주공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75,024.7	획지1	25,143.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99%이하	250%이하	90m이하		
			획지2	38,164.4		21.99%이하	250%이하			
			획지4	449.8	근린생활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7	450.1	교육연구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8	619.9	근린생활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구분			계획내용				
			획지1,2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4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담주점제외)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 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에 저촉되는 행위 및 시설					
			획지7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10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8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담주점제외)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 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에 저촉되는 행위 및 시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의 6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한계선	획지1	북서측 대로2-32호선 남서측대로 중로3-122호선 남동측 소로2-1호선 북측인접대지 경계선 동측 인접대지 경계선		폭5m 지정 폭5m 지정 폭3m 지정 폭5m 지정 폭3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확보		
획지2	북서측 대로 2-32호선 북측 중로3-122호선 북동측 중로3-122호선 남측 소로3-10호선 서측소로1-1호선			폭5m 지정 폭3m 지정 폭5m 지정 폭5m 지정 폭5m 지정						
기정	완화적용기준		○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35.18% + 지하주차장계획 10% = 255.18% - 계획용적률 : 250%이하							

7.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14. 09. 29 ~ 2014. 10. 29까지
8. 공 램 장 소 :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4773)
9. 관련도면 및 조서 : 개제생략(관련도면 및 조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1104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규정이 신설되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근거 규정이 마련되고(2013. 1.23)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시행(2013. 4.23) 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조항 등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인하여 인용 조항 정비
- 용어의 정의 일부 수정
-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인용 및 구성원에 대한 정비
-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시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가 인접 시·군·구에 속해 있는 경우 인접 지자체장에게 전통상업보존지구 지정 요청 조항 신설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첨부토록하고 등록 요건을 명시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경제지원과장, ☎560-4435, Fax 560-2730)에게 서면 또는 전화(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을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2조제3호의2”를 “「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제5호 중 “제1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한다.

제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규모점포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5

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협의회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서구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서구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서구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 나. 서구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서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등이 서구 소속공무원과 구의원인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그 당시의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구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한다.
-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회장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내용을 확인한 회장의 서명·날인

- ⑥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협의회회의 위원 및 관련자는 업무상 인지한 각 유통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협의회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회의 업무) 협의회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서구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서구지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의무휴무일 및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서구지역 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4. 서구지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변경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형·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일부가 인접 시·군·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지역을 전통산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산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를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구청장에게”를 “구청장에게 등록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개설등록”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u>상생발전</u>,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이하“서구”라 한다)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상생발전</u>,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 ----- -----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 -----.</p>
<p>1. 2. (생략)</p>	<p>1. 2. (현행과 같음)</p>
<p>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p>	<p>3. ----- 「법」 제2조제4호----- -----.</p>
<p>4. “대형유통기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 중 <u>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u>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p>	<p>4. “대형유통기업”이란 <u>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u>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p>
<p>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u>제1호의</u></p>	<p>5. ----- 「중소</p>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 8. (생략)

제6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 3. (생략)

<신설>

제7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기업기본법」 제2조-----

-----.

6. ~ 8. (현행과 같음)

제6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대규모점포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제7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5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③ <u>협회의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u></p>	<p>③ <u>협회의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u></p>
<p>1.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u></p>	<p>1. <u>서구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u></p>
<p>가. <u>대형유통기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u></p>	<p><삭 제></p>
<p>나. <u>재래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u></p>	<p><삭 제></p>
<p>다. <u>소비자단체의 대표</u></p>	<p><삭 제></p>
<p>라. <u>상공회의소 관계자</u></p>	<p><삭 제></p>
<p>마. <u>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u></p>	<p><삭 제></p>
<p>바. <u>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p>	<p><삭 제></p>
<p>사. <u>서구 의회 의원</u></p>	<p><삭 제></p>
<p>2. <u>유통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국장</u></p>	<p>2. <u>서구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u></p>
<p><신 설></p>	<p>3.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가. <u>서구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u></p>

<신 설>

④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협회는 년 2회 이상 개최 하되, 구청장은 협회의 개최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회의 소집 등 협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서구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서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등이 서구 소속공무원과 구의원인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그 당시의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구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협의회 위원 임기) ①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
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이 소속
공무원과 구의원인 경우에는 위
원장과 부위원장은 그 당시의
직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구의
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한
다.

<신 설>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회의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
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회장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
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
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으로 한다.

<신 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내용을 확인한 회장의 서명·날인

<신 설>

⑥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⑦ 협의회 위원 및 관련자는 업무상 인지의 각 유통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신 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제9조(유통업상생발전협회의 업무) 협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서구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서구지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의무휴무일 및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서구 지역 내 전통상업보존 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4. 서구 지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변경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형·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

	<p><u>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u></p>
<p>6. <u>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u>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p>	<p><삭 제></p>
<p>7. 제11조에 따른 <u>전통상업보전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u></p>	<p><삭 제></p>
<p>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u>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u></p>	<p><삭 제></p>
<p>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u>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유통업 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u></p>	<p><삭 제></p>
<p>제11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p>	<p>제11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p>
<p>① (생략)</p>	<p>①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② <u>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일부가 인접시·군·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지역을 전통사업</u></p>

<신 설>

- 1.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 2.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③ -----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p>등이 제5조에 따른 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p>	<p>----- -----</p>
<p>③ (생략)</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7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⑤ ----- -----<u>제4항</u>----- ----- -----</p>
<p>⑤ (생략)</p>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취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4항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3.18>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2 (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4항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1.23]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22>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해당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3.4.23]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3

제4조의3(협의회 운영 등)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3.4.2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110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하위법령 제·개정으로 규칙의 위임사항 신설 및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 응시자격요건 신설
- 전직시험 특례규정 신설
- 신규·전직시험 응시자격증 정비 및 신설
- 기능직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기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 반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560-4102, Fax 560-2710)에게 서면 또는 전화(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영 제21조의2에 따른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제10조는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제2차 시험”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을 “8급·9급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제14조제1호와 제2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20조는 삭제한다.

제21조 제목 “(서류전형 기준)”을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으로 하고,

제1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①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의2서식에 의거 검정한다.

같은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은 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를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로 하고, 제2항 중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을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

른 점수를 가산한다.

제23조제1항 중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제3항 단서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단서는 삭제하고, 제3호는 다음과 같이 하며,

가. 대학졸업자 : 6급·7급·연구사

나. 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지도사

다. 고등학교졸업자 : 9급

같은 조에 제8항과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2와 같다.

⑨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 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24조 제목“(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 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을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으로 하고, 제2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한다.

제27조에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 [14의2]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⑤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전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 제목 중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 등의)”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31조제1항 중 “영 제38조제4항”을 “영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는 삭제하고, 제2항 중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6조 중 “영 제7조의5제4항”을 “영 제7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의 규

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별표와 별지는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인사위원회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촉위원 1명이 상)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p>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근속승진임용 또는 우대승진 임용</u> 2. <u>명예퇴직·공무사망에 의한 특별승진 임용</u> 3. <u>명예·조기·자진퇴직수당 지급</u> 4. <u>전보제한자의 전보심의</u> 5. <u>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연장</u> 	<p>제7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u> 2. <u>영 제21조의2에 따른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종료 후의 임용</u> 3. <u>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심의</u> 4. <u>영 제27조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u> 5. <u>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u> 6. <u>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u> 7. <u>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u>

현행	개정안
<p>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p> <p>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p> <p>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p> <p><u>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u></p> <p>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를 포함한다.)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제14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 속한</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8급·9급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p> <p><u>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u></p> <p><u>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u></p> <p><u>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u></p> <p><u>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응시연령)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p> <p>1. 일반직 채용시험</p> <p>가. 7급 이상 : 20세 이상</p> <p>나. 8급 이하 : 18세 이상</p> <p>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p> <p>제20조(면접시험기준)①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으로 평정한다.</p> <p>1. ~ 5.(생략)</p> <p>②~④(생략)</p> <p>제21조(서류전형 기준)</p> <p>〈신설〉</p> <p>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p>	<p>1. 7급 이상 : 20세 이상</p> <p>2. 8급 이하 : 18세 이상</p> <p>〈삭제〉</p> <p>제21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p> <p>①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의 2호서식에 의거 검정 한다.</p> <p>② (현행①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3. 학력별 임용예정직급은 다음의 각목과 같다. 가. 대학졸업자 : <u>6급·7급·연구사·기능6급·기능7급</u> 나. 전문대학졸업자 : <u>7급·8급·지도사·기능7급·기능8급</u> 다. 고등학교졸업자 : <u>9급·기능9급 이하</u></p> <p>⑤영 제17조제1항제8호,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하여야 한다.</p> <p>⑥영 제17조제1항제9호,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p> <p>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3. (현행과 같음) 가. 대학졸업자 : <u>6급·7급·연구사</u> 나. 전문대학졸업자 : <u>7급·8급·지도사</u> 다. 고등학교졸업자 : <u>9급</u></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현행과 같음)</p> <p>⑧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u>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u>과 <u>한시임기제공무원</u>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2와 같다.</p> <p>⑨<u>지방전문경력관</u>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u>전문경력관</u>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p>

현행	개정안
<p>제24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p> <p>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별표에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p> <p>〈신설〉</p> <p>제 25 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특수직무분야 : <u>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 직류의 공무원</u></p> <p>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u>제7호</u>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p> <p>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p>	<p>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p> <p>제24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u></p> <p>제 25 조-----</p> <p>----- ① (현행과 같음)</p> <p>1. 특수직무분야 : <u>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u></p> <p>2. ----- ----- <u>제8호</u>의 ----- -----.</p> <p>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②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경력경쟁 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p> <p>제 27 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8과 같다.</p> <p>②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7에 따른다.</p> <p>③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이 기술훈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에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은 별표 15와 같다.</p> <p>〈신 설〉</p>	<p><삭 제></p> <p>제2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p>④ 「지방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 [14의2]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 이어야 한다.</p> <p>⑤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별표 7] 및 [별표 8] 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전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의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p>	<p>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 ----- ----.</p>
<p>제 36 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 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p>	<p>제 36 조(현행과 같음) 영 제7조의5제2항 ----- ----- -----.</p>
<p>제40조 <신설></p>	<p>제4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1108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안)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9. 26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연번	기 정				변 경 (안)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위치	면적(㎡)			위치	면적(㎡)
1	100	965.1	1	628.3	100	965.1	1	482.55
			2	336.8			2	482.55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6.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 열람 장소에 비치
7.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2)

의견서

일 시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의견사항	